

(재)구미시장학재단
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 제공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‘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’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* 서울 구미학숙 운영기관
- (2) 출연금액 : 150백만원(운영예산)
- (3) 출연근거
 - 「지방재정법」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나. 사업 개요

(1) 사업명 : 서울 구미학숙* 운영 지원

*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2가)

(2) 사업기간 : 2026년 1월 ~ 12월

(3) 사업내용 :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원

- 운영예산 : 430백만원(출연금 150, 입사생수입 170, 전기 이월금 110)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학숙 입사생들에게 쾌적한 주거·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- (2) 인건비, 공공요금 등 학숙 운영 소요예산 충당 및 안정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(3)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예산재정과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~ ④ (중략)

⑤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(재)구미시장학재단

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서울 구미학숙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에 따른 비용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4년 서울 구미학숙 목적사업회계 결산자료 및 2025년 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출연금 책정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 출	15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870,00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 비	15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870,000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학숙 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6. 작성자 :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김영섭(☎480-270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내 역
총 계	150,000	
인 건 비	소 계	124,000
	급 여	52,000 ● 사감 15,000,000원×2명 ● 주방조리원 22,000,000원×1명
	제 수 당	60,000 ● 주휴수당 등 60,000,000원×1식
	사회보험료	12,000 ● 건강보험 등 12,000,000원×1식
운 영 비	공 공 요 금	26,000 ● 전기요금 등 26,000,000원×1식

※ 2026년 운영예산(계획) : 430백만원

- ▶ (수입) 시 출연금 150, 입사생수입 170, 전기 이월금(추정) 110
- ▶ (지출) 인건비 124, 운영비·자산취득비 등 230, 시설유지비 50, 예비비 26

소 관 부 서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표
	팀 장	심 주 희
	담 당 자	김 영 섭 (480-2703)